

保險法の 改正方向

—通則・人保險—

梁 承 圭*

I. 머 리 말

保險法은 商法典 제 4 편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商法典은 1962. 1. 20. 法律 제1,000호로 제정·공포되어 1963. 1. 1. 부터 시행하고 있다. 商法은 企業生活關係를 규율하는 法으로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改正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商法改正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保險法の 改正에 대해서도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1984. 4. 10. 法律 제3,724호로 改正된 商法은 商業帳簿와 株式會社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되었고, 保險法과 海商法の 改正은 뒤로 미루었다. 우리 商法이 시행된 1963년 당시와 오늘의 우리의 保險産業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保險商品의 개발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保險法改正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法務部는 保險法과 海商法の 改正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保險法과 海商法の 改正方向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韓國保險學會는 1975년과 1981년에 각각 保險法の 改正意見을 제시한 바 있다.⁽¹⁾ 필자는 韓國保險學會의 改正意見을 마련하는 데 관여하였고, 또한 1981년에 韓國商事法學會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保險法改正意見을 발표한 바 있다.⁽²⁾ 保險法の 改正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改正範圍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는 오늘날 保險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는 모든 保險商品에 대하여 일일이 규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 保險法典을 單行法化할 때에 다루기로 하고 現行商法の 規정을 중심으로 그 改正方向을 찾아보는 것이 옳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도 그 동안에 발표된 여러 意見들을 종합하면서 商法典 제 4 편 保險 제 1 장 通則과 제 3 장 人保險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그 改正方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1) 1975년의 改正意見은 大韓商工會議所刊, 韓國經濟研究叢書: 商法改正試案 및 意見書, 1975, 196면 이하, 1981년의 改正意見은 韓國商事法學會編, 商法改正의 論點, 1981, <三英社>, 281면 이하 참조.

(2) 梁承圭, 保險法에 관한 改正意見, 위 商法改正의 論點, 136면 이하.

II. 保險法改正의 前提條件

1. 保險法の 基本理念의 고려

商法 제 4 편 保險에 관한 규정은 保險契約에 관한 것이다. 保險契約은 개별적으로 보면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이루어지는 私的契約에 속하나, 保險制度의 성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特性을 지니고 있다. 즉 保險制度는 인간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각종의 危險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制度로서 같은 危險에 놓여 있는 다수인 사이에 危險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뜻하지 아니한 事故로 인한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시키거나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保險은 危險團體(Gefahrengemeinschaft)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고,⁽³⁾ 개별적인 保險契約은 保險技術上 언제나 다수의 保險契約者로 구성되는 保險團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개별적인 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가 지급하는 保險料는 危險團體 안에서 大數의 法則에 따라 事故發生의 蓋然率을 측정하여 계산된 危險分擔額이고,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保險者가 지급하는 保險金은 바로 保險契約者들이 부담한 保險料로서 충당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保險契約關係는 保險契約의 個別性과 團體性의 相關關係를 조화시키도록 하여야 하고,⁽⁴⁾ 保險法の 적용에 있어서는 危險團體의 관념이 중요한 뜻을 지니는 것이다.⁽⁵⁾ 이에 따라 保險法은 團體性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⁶⁾

保險契約은 또한 保險者가 保險契約者로부터 保險料의 지급을 받고,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우연한 事故가 생긴 때에 保險金을 지급하기로 하는 점에서 일종의 射倖契約에 속한다. 그리고 保險契約은 有償契約이라고 하나, 保險契約者가 부담하는 保險料와 保險者가 부담하는 保險金 사이에는 等價性의 原理가 지배하지 않고 있으며,⁽⁷⁾ 保險者의 保險金支給責任이 우연한 保險事故의 발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保險契約者쪽에서 保險金을 노리고 人爲的으로 保險事故를 일으킬 危險인 이른바 道德的 危險(moral risk)이 깃들여 있다.⁽⁸⁾ 여기에서 保險契約은 當事者의 最大善意에 기초를 둔 人的善意契約(personal contract uberrimae fidei)이라고 불리어지고,⁽⁹⁾ 保險法은 善意性의 原理(doctrine of uberrima fides)를 그 기본

(3) Bruck-Möll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I. 8 Aufl., 1961, S. 96.

(4) 梁承奎, 保險契約의 基本構造, 法學, (서울대) 제24권 2·3호(1983), 130면,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458 판결 참조.

(5) Bruck-Möller, a.a.O. SS. 96, 97.

(6) 徐燦珪, 第三全訂 商法講義(下卷), 331면, 鄭熙喆 全訂版 商法學原論(下), 12면.

(7) 梁承奎, 前掲 法學, 129면 참조.

(8) 가령 生命保險契約에서 被保險者를 殺害한다든가 火災保險契約에서 保險의 目的에 放火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874 판결에서는 「선박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킨 후 풍랑으로 침몰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뜻을 判示하고 있다.

(9) William R. Vance, Law of Insurance, 3d, 1951, p. 96.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이에 따라 保險法에서는 保險契約者에게 保險契約의 歸結時에 告知義務(商 651조)를 지우고, 保險契約者가 詐欺에 의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保險契約 자체를 無效로 돌리거나(商 669조 4항 참조), 人爲的인 事故誘發에 대하여는 保險者의 責任을 면제하고 있다(商 659조).

여기에서 우리는 保險法은 保險制度의 성격상 保險契約이 하나의 私的契約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당사자의 이익의 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保險團體 전체의 이익과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고, 또한 保險契約을 악용하려는 惡意의 保險契約者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保險法の 改正에 있어서도 바로 保險法の 基本理念을 고려하여 善意의 保險契約者를 보호하는 동시에, 惡意있는 保險契約關係者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도록 制度的인 장치를 마련하여 道德的危險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法の 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立法技術上 가능한 한 保險法の 基本理念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保險法典의 單行法化的 문제

商法 제46조 17호는 保險을 기본적 商行為로 다루고 있고, 保險法은 형식적으로는 商行為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法이 규제하고 있는 保險契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保險法の 社會性·公共性 및 團體性이 강조되고, 保險事業의 主體가 비록 營利法人인 保險株式會社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私企業으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保險事業이 公共의 利益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므로 準公企業(quasi-public corporation)으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¹¹⁾ 여기에서 保險法은 商行為法の 理念과는 다른 原理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商法典과 분리하여 독립된 單行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保險法典을 單行法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 保險契約法이나 스위스 保險契約法과 같이 保險契約法만을 독립시키느냐, 아니면 1976년에 새로이 제정된 프랑스의 保險法典(Code des Assurance)이나 美國의 각 州의 保險法典과 같이 保險關係에 관한 모든 規定을 포함시킬 것이냐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保險契約法 뿐만 아니라 保險監督法 등 保險關係法을 하나로 묶는 保險法典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이것은 성급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로서 꾸준히 검토를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0)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1982, p. 6.

(11) *Corpus Juris Secundum*, vol. 44, Insurance, p. 607.

III. 改正의 論點

1. 通 則

(1) 保險契約의 成立, 更新, 復活

(가) 改正方向

제 638조의 2를 新設하여 保險契約의 成立, 更新 및 復活에 關하여 규정한다.

(나) 改正意見

第 638條의 2(保險契約의 成立등) ① 保險者가 그 營業部類에 속하는 保險契約의 請約을 받은 때에는 다른 約定이 없으면 相當한 期間(또는 15日) 안에 그 相對方에 대하여 諾否의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이를 개을리한 때에는 承諾한 것으로 본다. 다만 生命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身體檢査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期間은 身體檢査를 받은 날로부터 起산한다.

② 保險者가 현재 계속 중인 保險契約의 연장이나 변경 또는 失效된 保險契約의 復活의 請約을 받은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③ 保險者가 相對方으로부터 保險契約의 請約과 함께 保險料相當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은 경우에는 그 請約을 承諾하기 전에 保險契約에서 정하는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그 請約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限 保險者는(保險約款의 情함에 따라) 保險契約上의 責任을 진다. 그러나 生命保險契約의 被保險者가 身體檢査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理由

1) 保險契約은 保險契約者의 請約과 保險者의 承諾에 의하여 成立되는 이른바 諾成契約이다. 그러나 保險制度는 효율적인 危險分散에 의하여 각종의 危險에 對備하는 制度이고, 保險者는 그 保險團體의 危險管理人(risk manager)으로서 保險契約請約者의 請約에 따른 危險을 선택하여 승낙함으로써 保險契約이 成立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商法은 保險契約의 成立에 關한 아무런 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保險契約의 成立에 關하여도 民·商法의 一般原理에 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保險契約의 請約이 있을 경우에 保險者가 상당한 期間 안에 承諾의 通知를 發送하지 아니하면 請約의 拘束力을 잃게 되고 保險契約은 成立되지 아니한다(民法 529조, 商法 52조 참조).⁽¹²⁾ 여기에서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의 請約 후에 상당한 期間이 경과한 후에 保險事故가 발생하여도 保險者의 承諾이 없으면 아무런 保險保護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에 있어서는

(1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참조.

보험者の 諾否通知를 義務化하고 그 義務를 게을리할 때에는 保險契約의 成立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保險契約은 保險期間을 연장하거나 또는 保險契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保險契約者의 請約이 있으면 保險者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保險期間이 긴 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解止 또는 失效된 保險契約은 保險契約者의 편의를 위하여 그 復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復活請約의 경우에도 새로운 契約을 맺는 것과 같은 節次를 밟게 되므로 그러한 請約을 받은 保險者의 諾否通知義務를 決定하는 것은 保險契約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3) 오늘날 保險去來에 있어서는 保險募集人이 一般大衆을 상대로 保險加入을 권유하고, 保險契約請約者가 保險契約請約書와 함께 保險料相當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募集人에게 交付하고 領收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이처럼 保險契約請約時에 保險契約請約者가 保險料相當額을 支給한 때에는 비록 保險契約成立 전이라도 保險事故가 발생하면 保險者가 善意의 保險契約請約者에 대한 保險保護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라) 立法例

商法 第53條; 스위스保險法 第1條, 第2條, 獨逸保險法 第81條

(2) 保險約款의 알림

(가) 改正方向

第638條의 3을 新設하여 保險者가 保險契約者에게 保險約款의 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638條의 3(保險約款의 알림) ① 保險者는 普通保險約款을 保險契約請約書에 첨부하거나 保險契約의 請約 전에 保險契約請約者에게 그 約款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保險者가 제 1 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다) 理由

普通保險約款은 保險者가 미리 작성하여 保險契約의 내용을 이루는 定型의인 契約條項으로서 保險契約關係者를 구속하는 契約上의 法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保險契約이 성질상 다수의 保險加入者를 상대로 大量的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에서 그 契約의 내용을 定型化한 普通保險約款이 요구되고, 保險契約者로 하여금 保險契約을 請約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事後의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 保險業法 제156조 1호는 「保險契約의 契約條項 중 중요한 事項을 알리지 아니하는 行爲」를 禁止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募集에 종사하는 者가 保險契約者에게 普通保險約款의 중요한 條項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保險契約法에서 保險契約의 중요한 내

용을 알려야 하는 義務를 保險者에게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保險者가 保險約款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契約者의 선택에 따라 契約을 取消할 수 있도록 하여 保險契約者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立法例

스위스保險法 第3條.

(3) 他人을 위한 保險

(가) 改正方向

第639條에서 特定 또는 不特定의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他人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가 他人의 委任이 없을 때에는 그 事實을 保險者에게 告知하도록 하고, 保險契約者도 일정한 경우에 保險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639條(他人을 위한 保險) ① 保險契約者는 委任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特定 또는 不特定의 他人을 위하여 保險契約를 締結할 수 있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그 他人의 委任이 없을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이를 保險者에게 告知하여야 하고, 그 告知가 없는 때에는 他人이 그 保險契約의 締結을 알지 못하였다는 事由로 保險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경우에는 그 他人은 당연히 그 契約의 利益을 받는다. 그러나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保險證券을 所持하고 그 他人이 保險事故의 發生으로 생긴 損害의 賠償을 받았음을 證明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破産宣告를 받거나 保險料의 支給을 遲滯한 때에는 그 他人이 그 權利를 拋棄하지 아니하는 限 그 他人도 保險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

(다) 理由

1) 保險契約者는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나 人保險契約에 있어서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음부터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를 特定할 수 없는 때에도 그 他人을 特定하지 아니한 채 保險契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他人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의 경우에 그 他人은 被保險利益을 가지고 保險契約上의 權利·義務의 主體이므로 被保險者가 그 保險契約의 체결을 委任하였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事項이므로 이를 保險者에게 告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령 倉庫業者나 洗濯所의 主人이 保險期間 동안에 受置하게 될 物件에 대하여 그 所有者를 위하여 保險契約를 締結한 경우 保險契約者가 保險事故로 입은 損害를 그 所有者(被保險者)에게 賠償하여 준 때에는 保險契約者에게 직접 保險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他人을 위한 損害保險契約의 경우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金을 지급할 때에도 保險契約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商 659조 1항)이 없는 한 保險者의 求償權行使를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法 第74條, 第75條, 第77條, 第79條; 프랑스保險法 L. 112-1 條; 스위스保險法 第5條 第2項, 第16條, 第17條

(4) 保險證券의 交付

(가) 改正方向

第640條에서 保險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후에는 당연히 保險證券交付義務를 지도록 하고, 保險契約者는 第1回 保險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證券交付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640條(保險證券의 交付) ① 保險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때에는 지체없이 保險證券을 作成하여 保險契約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그러나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全部 또는 最初의 保險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既存의 保險契約을 延長하거나 變更한 경우에는 그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의 交付로써 保險證券의 交付에 갈음할 수 있다.

(다) 理由

保險證券은 保險契約이 成立한 후에 그 契約을 證明하는 證據證券이다. 現行商法은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의 請求가 있을 때에 미로소 保險證券을 交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늘날 保險實務에서는 保險契約者의 請求가 없어도 당연히 保險證券이 交付되고 있는 것이 實情이므로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의 成立과 더불어 保險料支給義務를 지게 되므로 保險者는 保險料의 支給을 받지 아니하고 가령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에서 그 他人에 대한 責任을 지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는 保險料의 支給이 있을 때까지는 그 保險證券의 交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既存의 保險契約과 동일한 내용의 契約을 계속하거나 또는 保險契約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새로운 保險證券을 交付하지 아니하고도 그를 證明하는 書類를 交付함으로써 事務處理를 간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法 第3條; 프랑스保險法 L. 112-3; 스위스保險法 第11條; 이탈리아民法 第1888條

(5) 保險契約의 無效

(가) 改正方向

第645條 第1項의 「保險金額을 請求하지 못한다」를 「保險料를 支給하여야 한다」로 改正하고 第2項을 削除한다.

(나) 改正意見

第645條(保險事故의 主觀的 確定的 效果)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만이 保險事故가 이미 發生한 것을 안 때에는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 理由

商法 第644條는 保險契約 당시에 保險事故가 이미 發生하였거나 이미 發生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保險契約을 無效로 하고, 다만 保險契約 當事者 雙方과 被保險者가 그 事實을 알지 못한 때에만 保險契約의 效力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 그리고 保險者의 雙方 또는 어느 한 쪽이 이미 保險事故가 客觀적으로 確定되었음을 안 때에는 保險契約은 당연히 無效이고, 따라서 相對方에 대해서 請求權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그 事實을 알면서 保險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게 保險料支給義務을 지우는 것은 保險契約의 善意性에서 볼 때에 마땅하다고 여겨 이를 改正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保險事故發生前의 任意解止

(가) 改正方向

第649條 第1項에 但書를 新設하여 他人을 위한 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同意를 얻어서만 契約을 解止할 수 있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649條(事故發生前의 任意解止) ① ... 그러나 第639條의 경우에 그 他人이 保險證券을 所持하고 있는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그 他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한다.

(다) 理由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이 맺어지면 그 他人은 당연히 保險契約上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商 第639조).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은 일반적으로 民法上의 第三者를 위한 契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民法上 第三者를 위한 契約에서 「第三者의 權利가 생긴 후에는 當事者는 이를 變更 또는 消滅시키지 못한다」(民 第541조). 그런데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에서는 가령 履行保證保險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保險契約者가 保險者로부터 保險證券을 交付받아 債權者인 被保險者에게 그 保險證券을 引渡한 다음에도 商法 第649조에 의하여 任意로 契約을 解止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債權者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¹³⁾ 이것은 결국 債權의 擔保를 위하여 保證保險을 이용하고 있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해쳐 그 保險契約의 效用性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에서 그 他人이 保險證券을 所持하고 있는 限 그 保險契約의 解止를 制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契約法 第75條 2項, 第76條 ; 스위스保險法 第17條

(13)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591 판결.

(7) 保險料의 支給

(가) 改正方向

第650條를 改正하여 保險契約成立과 동시에 保險契約者의 保險料支給義務를 認定하고, 繼續 保險料의 支給이 없는 경우에 契約이 解止 또는 失效約款의 效力에 關하여 규정한다.

(나) 改正意見

第650條 (保險料의 支給과 遲滯의 效果) ① 保險契約者는 契約締結 후 지체없이 保險料의 全部 또는 保險料의 分割支給을 約定한 때에는 第1回 保險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保險契約者의 保險料의 支給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約定이 없는 限 1月이 경과하면 그 契約은 解止된 것으로 본다.

② 繼續 保險料가 適當한 時期에 支給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2週間 이상의 期間을 定하여 保險契約者에게 催告하고 그 期間 안에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每月 保險料를 분할하여 支給하기로 한 保險契約에 있어서는 保險料의 支給期日로부터 1月 이상의 支給期間을 猶豫하고 그 猶豫期間 안에 保險料의 支給이 없는 때에 그 契約의 效力을 잃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 理由

1) 保險料는 保險者가 危險을 引受한 對價로서 支給하는 것이다. 保險契約에서의 保險料는 保險者가 保險事故의 發生을 전제로 支給하게 되는 保險金과 對價의인 關係에 있다고 하나, 이것은 大數의 法則에 의하여 保險團體 전체의 事故發生率에 따라 算定된 것으로 개별적인 保險契約에서 保險料와 保險金은 等價性의 原理는 支配하지 않고, 保險團體 전체의 構造에서만 그 原理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保險契約에서는 保險者의 危險擔保의 對價로서 保險料의 支給이 先行되어야 하므로 保險料의 支給時期를 明確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保險契約은 일정한 期間 계속되는 契約으로서 分割保險料의 初回 保險料의 支給이 없으면 保險者의 責任이 開始되지 아니하나(商 656조), 第2回 이후의 繼續 保險料의 支給이 없을 때에 그 支給期日이 經過하면 당연히 保險者의 契約解止權을 인정하는 것은 保險契約者에게는 가혹하다. 그리하여 現行商法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催告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週間으로 하고, 그 기간 안에 保險料의 支給이 없으면 保險契約을 解止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分割保險料의 支給에 있어서 매달 支給하기로 하는 경우에 保險契約者가 그 支給기일에 保險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달 반복해서 催告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保險料의 支給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까지 保險料의 支給이 없을 때에는 保險契約의 失效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去來의 실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保險者가 保險料의 支給期日로부터 1個月 이상의 支給猶豫期間을 두어 그 期間의 經過와 더불어 保險契約이 失效된다는 失效約款의 效力을 大法院

判例가 인정하고 있는데⁽¹⁴⁾ 이를 成文化하고자 하는 것이 第2項 但書의 規定이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法 第35條, 第38條, 第39條; 프랑스保險法 L. 113-3條; 스위스保險法 第20條

(8) 告知義務

(I) 書面에 의한 質問의 效力과 告知

(가) 改正方向

第651條 第2項을 新設하여 質問表의 效力과 書面에 의한 告知를 규정한다.

(나) 改正意見

第651條 (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契約解止) ① ...

② 保險者가 書面으로 質問한 事項은 중요한 事項으로 推定하고, 그 書面에 의하여 告知한 때에는 書面에 의하여 告知한 것만이 告知의 效力이 있다.

(다) 理由

保險制度는 다수의 經濟主體 사이에 효율적으로 危險을 분산시켜 經濟生活의 안정을 꾀하는 制度로서 그 危險의 選擇에 있어서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告知義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에서 危險의 選擇에 관하여 무엇이 중요한 事項인가를 잘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保險者는 구체적으로 保險契約請約書에 質問欄을 두어 告知義務者가 기계적으로 對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保險去來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保險契約請約書에서 이용하고 있는 質問表의 效力에 관하여 규정하고, 또 保險契約者가 質問表에는 事實과 다르게 기재하고 保險募集人 등에게 告知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는 書面에 의한 告知의 效力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法 第16條, 第18條; 스위스保險法 第4條

(II) 詐欺로 인한 告知義務違反

(가) 改正方向

第651條의 2를 新設하여 詐欺로 인한 告知義務違反의 경우 保險契約을 無效로 한다.

(나) 改正意見

第651條의 2(詐欺로 인한 告知義務違反) 前條의 告知義務違反이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詐欺로 인한 경우에는 그 契約을 無效로 한다. 이 경우에도 保險契約者는 保險者가 그 事實을 안 때까지의 保險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 理由

保險契約은 善意契約으로서 危險을 管理하고 支配하고 있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1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329 판결.

그 危險에 관하여 保險者에게 精確하게 告知할 것이 要求된다. 告知義務는 保險契約上의 義務가 아니고 保險契約의 特殊한 性格 때문에 保險契約 밖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保險團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保險을 惡用하는 者를 制裁하여 道德的 危險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령 病院에 入院하고 있는 者 또는 重病의 診斷이 내린 후에 그 事實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保險契約를 締結한 경우에는 이를 無效化하고 保險者가 그 詐欺의 事實을 안 때까지의 保險料를 支給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現行 商法の 解釋上 告知義務違反과 詐欺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商法만을 적용하여 除斥期間이 경과한 후에는 保險契約를 解止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保險契約의 善意契約性에 비추어 불 때에 民法의 詐欺에 관한 규정(民 110조)에 따라 保險者는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¹⁵⁾, 이를 立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要求된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法 第22條 ; 프랑스保險法 L. 113-8條

(Ⅲ) 告知義務違反事實과 因果關係

(가) 改正方向

제655조 단서에서 「告知義務에 違反한 事實」을 삭제한다.

(나) 理由

商法 제655조 단서는 告知義務에 違反한 事實이 保險事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保險者의 保險契約解止權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保險事故가 告知事項과 因果關係가 없는 다른 사실에 기인한 때에는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으나, 告知義務制度의 성격과 연관시켜 볼 때에는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保險契約者가 告知義務를 제대로 이행하였으면 保險契約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條件으로는 契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상황에서 우연히 因果關係가 없다는 이유로 保險者의 責任을 인정하는 것은 衡平의 관념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¹⁶⁾ 道德的 危險을 일으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商法 제655조 단서의 그 規定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保險金額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改正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 立法例

프랑스保險法 L. 113-9條

(Ⅳ) 告知履行促求

(가) 改正方向

第651條의 3을 新設하여 保險者가 保險契約者 등에게 告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게을리

(15) 梁承圭, 告知義務에 관한 考察, 法學, (서울대) 제26권 1호(1985. 4), 169면 참조.

(16) 위 論文, 168면.

할 때에는 告知義務違反을 가지고 다투지 못하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651條의 3 (告知履行促求) 保險者는 保險契約締結 당시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告知義務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告知義務違反을 가지고 다퉴 수 없다.

(다) 理由

일반적으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保險契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告知義務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리하여 保險者는 保險契約를 맺을 때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告知義務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¹⁷⁾ 그러한 告知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保險事故의 발생 후에 告知義務違反을 이유로 保險契約를 解止하고 保險金支給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保險者는 保險契約를 맺을 때에 保險契約者에게 保險契約上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告知하도록 촉구하게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의 法的 效果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9) 保險事故의 發生과 保險金支給

(1) 保險事故發生의 通知義務 등

(가) 改正方向

第657條에 第2項과 第3項을 新設하여 保險事故發生時 保險者의 事故原因調査 등에 保險契約者 등의 協助義務를 지우고, 그러한 義務를 故意로 기피한 때에는 保險者의 保險金支給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657條(保險事故發生의 通知義務 등) ① …

②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는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保險者의 要求에 따라 保險事故發生의 事情, 經過 등을 설명하고 保險者의 事故에 관한 調査에 協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費用이 過大하게 드는 때에는 이를 保險者가 負擔한다.

③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前2項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金의 支給을 拒絶할 수 있다.

(다) 理由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故의 原因調査는 물론 損害査定 등 일정한 節次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保險事故의 發生原因이나 周圍의 모든 事情을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가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保險者는 그들의 協助없이 정확한 事故原因調査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리하여 保險契約者 등의 事故發生通知義務와 함께

(17) 保險業法 제156조 1호~3호 참조.

保險者の 調査에 協助하도록 하는 協助義務를 인정하고, 그 義務를 正當한 事由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金の 支給을 拒絶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人爲的인 事故의 誘發과 證據湮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法 第33條 第2條 ; 스위스保險法 第38條, 第40條

(Ⅱ) 保險金支給時期

(가) 改正方向

第658條를 改正하여 保險金支給時期를 保險事故發生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하지 말고 保險者が 支給할 保險금이 確定된 때로부터 한다.

(나) 改正意見

第658條 (保險金額의 支給) 保險者は 保險金の 支給에 關하여 約定期間이 있는 때에는 그 期間 안에, 約定期間이 없는 때에는 前條의 通知를 받아 保險者が 支給할 保險금이 確定된 날로부터 10日 안에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 理由

保險者は 保險事故發生의 通知를 받은 후 生命保險과 같은 定額保險의 경우에는 保險事故의 原因調査 등을 거쳐 즉시 保險金を 支給할 수 있으나, 損害保險의 경우에는 事故原因의 調査는 물론 損害査定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保險者が 支給할 保險金の 限度가 얼마나 하는 것을 정해야 하므로 그 損害査定 등의 節次를 끝낸 때로부터 保險金支給時期를 정하는 것이 合理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現行商法은 保險受益者에게 保險金額을 支給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損害保險의 被保險者를 추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0) 保險者の 免責事由

(가) 改正方向

第659條 第2項을 削除한다.

(나) 理由

우리 商法은 死亡保險과 傷害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故意로 인한 保險事故만을 免責事由로 하고 重大한 過失로 인한 事故에 대하여는 保險者の 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人保險의 경우 保險受益者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保險法이 保險契約者 등의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인한 事故를 保險者の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 것은 人爲的인 事故誘發에 의한 道德的 危險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사람의 死亡이나 傷害가 故意로 인한 경우만을 免責으로 하고 重過失을 負責事由로 하는 경우에 가령 달리는 自動車에 뛰어들어 事故死를 가장하였을 때에 故意性이 立證되지 못하는 限 保險金を 支給하도록 하는 것은 道德的 危險을 불러 일으킨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保險契約上 道德的 危險이 많은 것은 死亡保險에서 찾을 수 있고,

또한 保險契約者 등의 故意에 대한 立證責任은 保險者에게 있는데, 保險者가 이를 立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死亡保險이나 傷害保險의 경우에 중대한 過失로 인한 事故에 대해서도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하고, 自殺約款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期間이 經過한 후에 일어난 事故에 대해서만 重過失도 擔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第659條 第2項 但書의 死刑의 執行으로 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規定한 것은 犯罪人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保險契約法에서 規制할 事由는 아니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이 條文은 削除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만일 削除하는 것이 어려우면 保險契約成立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만 중대한 過失로 인한 死亡·傷害에 대하여 保險者가 保險金支給責任을 지도록 改正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1) 保險契約法の 相對的 強行性的 限界

(가) 改正方向

第663條의 本章의 規定을 本編으로 하고, 但書를 두어 再保險, 海上保險 및 保證保險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않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663條 (保險契約者 등의 不利益變更禁止) 本編의 規定은… 그러나 再保險, 海上保險 및 保證保險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理由

保險契約者 등의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은 家計保險에서 一般保險契約者를 보호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再保險이나 海上保險과 같은 企業保險에서는 當事者 사이의 特約에 의하여 개별적인 利益調整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海上保險의 경우에는 國際的인 去來關係에서 英文保險約款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商法 第663條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規制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保險業法 第5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保證保險이 保險事業으로서 영위되고 있으나 保證의 성격은 띠고 있고, 따라서 保險契約法の 原理에 따라지만 規制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保險의 경우에는 그 保險의 性格에 따라 어느 정도 保險約款에 의하여 規制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保險契約者 등의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의 適用限界를 명백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 立法例

프랑스保險法 L. 111-1條 ; 獨逸保險法 第159條

(12) 共濟에의 準用

(가) 改正方向

第664條에 共濟를 추가한다.

(나) 改正意見

第664條 (相互保險 등에의 準用) 本編의 規定은 相互保險과 共濟에 準用한다.

(다) 理由

우리 나라의 農業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 蓄産業協同組合 및 自動車運輸組合 등에서는 保險契約과 같은 형태의 共濟制度를 영위하고 있다.⁽¹⁸⁾ 즉, 共濟의 이름으로 영위되는 生命共濟, 火災共濟, 漁船共濟, 自動車共濟 그 실체는 保險이라 할 수 있고, 그 共濟約款은 保險約款과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共濟는 類似保險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共濟(保險)에 대하여 保險契約法の 規定을 準用하도록 하는 法の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人 保 險

(1) 人保險證券

(가) 改正方向

第728條의 被保險者와 保險受益者의 生年月日을 밝히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728條 (人保險證券) …

2. 被保險者의 住所, 姓名 및 生年月日

3. 保險受益者를 定한 때에는 그 住所, 姓名 및 生年月日

(다) 理由

人保險契約에서 被保險者의 生年月日은 중요한 事項이고, 또한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同一性을 證明하기 위하여는 同名異人이 있기 때문에 生年月日까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人保險者의 代位

(가) 改正方向

第729條를 削除한다.

(나) 理由

일반적으로 保險者代位는 損害保險契約의 損害補償性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立場에서는 生命保險과 같은 定額保險의 경우에는 第3者에 대한 保險者代位禁止規定은 하나의 注意的인 規定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保險制度는 그것이 損害保險이든 人保險이든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利益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아니한 事故에 對備하여 經濟生活의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制度이고, 또한 人保險에 있어서도 가령 傷害保險의 경우에는 損害保險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保險에 있어서 被保險者의 傷害가 제3자의 行爲로 말미암은 경우에 保險金を 支給한 保險者가 第3者에 대한

(18) 農協法 제58조 1항 6호, 제58조의 2, 제125조 1항 5호; 水協法 제65조 1항 6호, 제4항, 제105조 1항 5호; 蓄協法 제53조 1항 13호, 제102조 12호; 陸運振興法 제8조 등 참조.

權利를 굳이 행사할 수 없다고 制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商法 第729條를 削除하여 保險政策上的 필요에 따라 保險約款에서 그 代位權을 정한 경우에 그에 대한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 他人의 死亡保險

(가) 改正方向

第731條의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 他人의 同意를 保險契約締結時에 書面に 의하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731條 (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 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契約에는 保險契約締結時에 그 他人의 書面に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 理由

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을 無制限 인정할 때에는 賭博保險으로 악용되거나 人爲的 危險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制限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商法은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에 同意主義를 취하고 있으나 그 同意의 時期나 方法을 정하지 않고 있어 保險事故發生 후에 紛爭의 소지가 많다. 그리하여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 被保險者의 書面に 의한 同意를 保險契約의 成立要件으로 함으로써 保險契約成立후의 분쟁과 道德的 危險을 막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法 第159條 ; 프랑스保險法 L. 132-2條 ; 스위스保險法 第74條 第1項

(4) 被保險利益

(가) 改正方向

第731條의 2를 新設하여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에 被保險者와 保險受益者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제731조의 2(被保險利益) 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契約의 경우에 保險受益者는 被保險者의 配偶者, 被扶養者 또는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者에 한한다.

(다) 理由

우리 商法上 被保險利益이란 관념은 損害保險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通說이다. 그러나 生命保險도 損害保險과 같이 保險制度의 본질적 · 궁극적 기능으로서의 우연한 事故로 인한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被保險者의 死亡과 관련하여 人爲的인 危險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에는 그 他人의 書面同意에 의해서 保險契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외에 被保險者와 保險受益者 사이에는 血緣 또는 法律에 의하여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道

德의 危險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生命保險契約에 被保險利益의 관념을 끌어들이는 때 解釋上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에 그 他人인 被保險者의 同意만을 要件으로 할 때에 被保險者가 死亡한 후에 그 同意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이외에 그 被保險者와 保險受益者의 法律關係 또는 事實關係를 고려하여 그 保險契約의 效力을 판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生命保險에 있어서 被保險利益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立法例

뉴욕州 保險法 第146條

(5) 未成年者의 死亡保險

(가) 改正方向

第732條의 18歲未滿者를 13歲未滿者로 한다.

(나) 改正意見

第732條 (13歲未滿者 등에 대한 契約의 禁止) 13歲 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다) 理由

프랑스保險法은 12歲未滿, 中國保險法이 14歲未滿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 商法이 정한 年齡基準이 높고, 이에 따라 특히 工場勤勞者들의 團體保險에서 18歲未滿의 未成年者를 제외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하여 勤勞基準法 제50조의 勤勞者의 最低年齡에 맞추어 그 나이를引下하여 保險人口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立法例

프랑스保險法 L. 132-3條

(6)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權

(가) 改正方向

第733條 第4項을 新設하여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權을 保險事故發生前에만 行使할 수 있음을 明示한다.

(나) 改正意見

第733條 (保險受益者의 指定 또는 變更의 權利) …

④ 保險契約者가 第1項과 前項의 指定權을 行使하기 전에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그 相續人을 保險受益者로 한다.

(다) 理由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의 경우에 保險事故가 생기면 그 發生時期를 기준으로 保險金請求權者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保險契約者가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權을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保險契約者의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權은 保險事故가 생기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學說의 입장이고, 이를 明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團體保險

(가) 改正方向

第736條의 2를 新設하여 團體生命保險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나) 改正意見

第736條의 2(團體保險) (1) 組織(團體)의 代表者는 團體協約 또는 그 組織의 規約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被保險者로 하는 生命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保險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 1 항의 경우에 被保險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때에도 제 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의 保險契約이 성립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에 대해서만 保險證券을 交付한다.

(다) 理由

團體生命保險은 團體에 속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被保險者로 하여 그 生·死를 保險事故로 하는 生命保險이다. 團體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團體의 구성원이고, 保險加入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保險料는 그 團體가 부담하여 그 구성원의 福利厚生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企業의 성장과 더불어 그 종사자의 厚生福祉를 위하여 團體保險의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따라 團體保險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團體保險에 있어서는 被保險者 개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 組織 안에서의 身體檢査 등으로 대체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告知義務에 관한 문제, 또는 保險料의 지급과 保險事故의 발생시에 保險金의 청구에 관하여도 去來의 실정을 검토하여 立法化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立法例

프랑스保險法 L. 140-1條 ; 뉴욕州保險法 第190條, 第161條

(8) 傷害의 개념

(가) 改正方向

第737條 第2項을 신설하여 傷害의 개념을 규정한다.

(나) 意見

第737條(傷害保險者의 責任) (1) ...

(2) 이 節에서 傷害라 함은 被保險者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外來的인 事故로 신체의 손상

을 입는 것을 말한다.

(다) 理由

이 규정은 傷害保險契約의 定義를 세워 傷害保險에서 保險者가 담보하고 있는 保險事故가 무엇이냐를 밝히려는 데 두고 있다. 傷害保險은 被保險者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外來의 事故로 신체가 손상되었을 때에 保險者가 保險金을 지급하기로 하는 人保險으로서 傷害를 원인으로 死亡하는 傷害死亡을 포함한다. 그러나 被保險者가 疾病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다가 死亡한 경우에는 傷害死亡이 아니고⁽¹⁹⁾ 이에 대하여는 保險者의 擔保責任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규정은 傷害의 定義를 뚜렷이 밝힘으로써 당사자의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 그 뜻을 두고 있다.

(9) 數個의 傷害保險

(가) 改正方向

第738條의 2를 신설하여 수개의 保險契約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意見

第738條의 2(數個의 傷害保險) (1) 동일한 被保險者의 傷害에 대하여 수개의 保險契約이 同時 또는 順次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 保險金總額이 각 保險者가 지급하는 保險金額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保險者는 각자의 保險金額의 비율에 따라 그 保險金額의 한도에서 補償責任을 진다.

(2) 동일한 被保險者에 대하여 수개의 保險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保險契約者는 각 保險者에 대하여 그 내용을 通知하여야 한다.

(다) 理由

傷害保險契約은 人保險으로서 保險價額의 관념이 없으므로 超過保險 또는 重複保險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保險市場에서는 生命保險 또는 傷害保險에서 政策上 被保險者 1인에 대하여 引受할 수 있는 保險金額의 한도가 정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引受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被保險者가 수인의 保險者와 保險契約을 체결함으로써 그 限度額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또한 道德的 危險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하여 수개의 傷害保險契約이 있는 경우에도 保險政策上 하나의 被保險者에 대하여 모든 保險者가 引受할 수 있는 保險金額 한도에서 被保險者에게 補償할 금액을 각 保險者가 比例補償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危險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保險契約者도 수개의 保險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그 保險金額의 한도를 묻지 않고 각 保險者에 대하여 通知하도록 함으로써 保險者의 危險管理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19)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참조.

(10) 準用規定

(가) 改正方向

第739條에서 第680條를 추가하여 傷害保險契約者 등의 損害防止義務를 규정한다.

(나) 改正意見

第739條(準用規定) 傷害保險에 관하여는 第680條와 第732條를 제외하고 生命保險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 理由

傷害保險은 人保險에 속하나, 傷害로 인한 治療費 등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損害保險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被保險者의 傷害事故가 생겼을 때에는 應急治療 등 損害防止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당연한 요청이므로 損害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지는 損害防止義務(商 680조)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라) 立法例

獨逸保險契約法 第183條